

## 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

제정	1996.	3.	1	훈령	제 9호
개정	1998.	10.	17	훈령	제 5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	1999.	3.	13	훈령	제 68호
	2000.	4.	6	훈령	제 86호
	2001.	3.	16	훈령	제 110호
	2003.	3.	31	훈령	제 14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	2005.	10.	5	훈령	제 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
	2007.	7.	1	훈령	제 26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통령 훈령」 제28호 세부시행 규칙에 의거 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용인시 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는 용인시 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써 협의회 안에 설치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②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,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그리고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그 기구는 별표와 같다.

③ 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

가. 구성

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과 군·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육군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또는 경찰서 경비과장이 된다.

나. 운영책임

1) 평시 : 경찰서장

2) 사태발생시 : 172연대 3대대장

2. 종합상황실

- 가.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한다.
- 나. 종합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·감독한다.

### 3. 분야별 지원반

- 가.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수송지원반, 의료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(급식)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- 나.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다.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.

제4조(통제)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, 통제를 받으며 보고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무) 지원본부 구성 및 분야별 지원반(장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본부장 : 부시장
  - 가.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·감독
  - 나.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
  - 다.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지휘·감독
  - 라.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
  - 마. 산하 인접기관과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
  - 바.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태세 유지
2. 군·경 정보작전 상황실(장) : 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또는 경찰서 경비과장
  - 가.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
  - 나.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
  - 다. 군·경 작전상황 종합분석, 판단 및 조치

- 라.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첨보제공,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
  - 마. 군 및 경찰작전상황을 종합지원 상황실(장)에 통보 및 협조
  - 바. 주민신고 업무 관장
  - 사. 작전 및 대비정규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
3. 종합지원상황실(장) : 차치 행정국장 <개정 2000. 4. 6, 2007. 7. 1>
- 가. 각종상황 파악 유지 및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·통제
  - 나.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
  - 다.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지지
  - 라. 대비정규전 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협의회에 건의
  - 마.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지원 상황실 지휘·감독
  - 바.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계획조정 통제
4. 총괄지원반(장) : 행정과장
- 가.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
  - 나.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
5. 인력동원지원반(장) : 재난안전과장 <개정 2007. 7. 1>
- 가.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
  - 나. 예비군,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
  - 다.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
  - 라. 국가동원계획의 인력·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
  - 마.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
  - 바. 주민통제 업무 관장
6. 건설수송지원반(장) : 도로과장 또는 교통과장 <개정 2007. 7. 1>
- 가. 산업,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차량 소요판단 및 확보
  - 나.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 조편성 운용
  - 다. 실비변상 및 회수 반환 업무 관장
  - 라.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

마. 민 방위 기술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업무 관장

7. 의료·구호 지원반(장) : 처인구 보건소장 <개정 1999. 3. 13, 2007. 7. 1>

가.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의 수립, 시행과 지원업무 관장

나. 의료구호조를 편성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, 조정통제

다.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

라.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

마.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

8. 통신지원반(장) : KT용인지점장 또는 정보통신과장 <개정 2007. 7. 1>

가. 통신지원계획의 수립, 시행 및 동지원업무 관장

나.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운용

다.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감독

라. 통신지원 조편성,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

마. 국가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준비 지원

9. 보급(급식)지원반(장) : 사회복지과장 또는 농축산과장 <개정 2007. 7. 1>

가.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 급식 및 지원업무 관장

나.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

다.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 집행 준비

10. 홍보지원반(장) : 공보실장

가.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

나.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(계몽)반 편성, 운영

다.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준비

라.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시행

11. 재정지원반(장) : 기획예산과장 또는 회계과장

가. 예산지원계획의 수립, 시행 및 동지원업무 관장

나. 지원본부 운영예산 확보 및 집행 결산

다.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

제6조(직무)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### 1. 본부장

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 한다.

### 2. 종합상황실장

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·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장을 대행한다.

### 3. 지원반장

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는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4. 지원반원

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세부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시는 그 반의 선임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근무)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·운용한다.

제8조(회의소집) ① 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합동훈련 시 또는 방위협의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
② 지원본부 회의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17 훈령 제5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1999. 3. 13 훈령 제68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

부칙 <2000. 4. 6 훈령 제8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3. 16 훈령 제11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. 3. 31 훈령 제14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19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7. 1 훈령 제26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&lt;개정 2007. 7. 1&gt;

## 용인시 방위지원본부

